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 이동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·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및 4조)
- 3)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7조)
- 4)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(안 제8조)
- 5)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(안 제9조 및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노약자·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개별시설을 접근·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편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무장애 도시 및 개별시설에 대한 본 조례상의 정의를 규정함

나)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시설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, 이동편의시설

다)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7조)

- 무장애 도시 구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라)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(안 제8조)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